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32
----------	-----

2023년 6월 21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준오 의원 외 16명
- 나. 제안일 : 2023년 5월 18일
- 다. 회부일 : 2023년 6월 5일
- 라. 상정일 : 제319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년 6월 2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준오 의원)

### 가. 제안이유

-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안 제4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제6조)
-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제8조)
-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안 제10조)
- 청년친화도시 지정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3.6.8. ~ 6.12.)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제정조례안은 총 1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1조~제4조)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5조~안 제15조)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영향평가, 청년친화도시 지원, 교육, 홍보,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번호/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년", "청년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등 용어 정의
제3조(책무)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청년친화도시 계획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위원회의 설치)	청년친화도시 조성 자문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
제8조(기능)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기능, 심의·의결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
제10조(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위탁근거, 청년친화도 평가
제11조(청년친화 영향평가)	청년정책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환류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시장의 (자치구)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협력의무
제13조(경비지원)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14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관련 행정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력
제15조(교육 및 홍보)	청년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나. 제정 취지 검토

#### (1)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

- 청년의 특징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있다는 것으로 학업과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넘어가 홀로서는 성인으로 자립하는 중간 전이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임. 최근 우리나라 청년의 경우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으며<sup>1)</sup>, 사회경제적 변화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가중<sup>2)</sup>시키고 있어 그 지원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 ①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입사연령 : 1998년 25.1세 → 2018년 30.9세 (취업포털 인터크루 데이터)

② 평균 초혼 연령 :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 → 2022년 남자 33.7세 여자 31.3세 (통계청)

③ 평균 초산 연령 : 1993년 26.2세 → 2020년 32.2세 (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

2) '23.5월 청년층 고용률 47.6% (15~64세 고용률 69.9%), 청년층 실업률 5.8% (전체 2.7%) [5월 고용동향, 통계청]

- 하지만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많아질수록 정책에서 배제된 세대의 불만이 발생하고 표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력을 낳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음

**< 청년정책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 >**

언 론 보 도
청년 대출한도 확대에..."무주택 4050이 더 우울한데" - 이데일리, 23.06.24.
"청년만 국민이냐"...후배에 월급 역전당하는 '중장년의 한탄' - 헤럴드경제, 23.5.6.
'청년 지원' 우후죽순...4050 "우리는?" - KBS대전, 23.4.25.
"360만원 넣어 1440만원 받는다고?" 청년내일저축에 4050 부글부글 - 아시아경제 23.4.23.
2030보다 위험한 중장년 '빚투'..."청년만 혜택은 역차별" 불만 - 주간조선, 22.10.12.

**(2) 청년정책 영향평가의 필요성**

-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 주요 청년정책 중 인지율이 50% 이상이 되는 사업은 2개에 불과하고, 향후 정책 참여(이용) 의향에 대해서도 4개 사업만이 50% 이상의 긍정 응답을 받았음
- 서울시가 발표한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sup>3)</sup> 중 청년정책 총괄 평가에서도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낮아 정책 전달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청년친화도 평가, ▲청년친화 영향평가를 규정하여 정책 지침과 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3)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12.)

## <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 >

### □ 정책경험과 평가

- 기간 : 2021.11.1. ~ 2022.4.1.      - 표본 : 5,194명. 만 18~34세

분야	구분	인지율		향후이용의향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일자리	서울뉴딜형 일자리	20.1	79.9	35.8	64.2
	취업날개서비스	30.9	69.1	34.7	65.3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15.3	84.7	32.1	67.9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3.3	86.7	30.4	69.6
	일자리 카페	25.7	74.3	37.9	62.1
	캠퍼스 타운	10.4	89.6	22.0	78.0
주거	<b>역세권 청년주택</b>	<b>51.0</b>	49.0	<b>59.1</b>	40.9
	노장청 셰어하우스	8.6	91.4	18.8	81.2
	청년월세지원	48.5	51.5	<b>53.4</b>	46.6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39.7	60.3	<b>55.5</b>	44.5
복지	<b>청년수당</b>	<b>56.8</b>	43.2	<b>54.9</b>	45.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5.4	54.7	26.6	73.4
	서울시 청년 '마음잇다'	11.4	88.6	37.9	62.1
참여공간	서울청년센터	15.9	84.1	25.2	74.8
	청년자율예산	6.7	93.3	26.6	73.4

### (3) 청년친화도시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 현황

- '청년친화도시'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청년기본법」 개정(2023.3.21.개정, 2023.9.22.시행)을 통해 제26조의6(청년친화도시) 조항이 신설되었음
- 자치법규로는 '18.12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조례<sup>4)</sup>」에서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을 규정하였으며, 이후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친화도시' 규정을 포함하였고('19.9월)<sup>5)</sup>, 대구광역시 중구('21.2월), 충청남도('23.3월)의 「청년 기본 조례」에도 '청년친화도시' 내용이 신설되었음
  - 광주광역시 북구를 제외한 3개 자치단체(경남, 대구 중구, 충남)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친화도시' 규정을 추가 하였음

4) 다만,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조례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

5)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20~계속) :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2개 지역을 선정 2년간 지원  
- 선정 지자체 : '20년 거제, 남해, '21년 밀양, 함안, '22년 김해, 고성

## < ‘청년친화도시’ 관련 자치법규 현황 >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복지·사회·교육·예술·문화 등 전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복지·사회·교육·예술·문화 등 관련 정책을 청년친화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20조(청년친화도시 조성) ①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시·군이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복지·사회·교육·예술·문화 등 전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정책관) ② 청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5. 청년발전 구현정책 운영 지역(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

### 다. 조례안 검토

#### (1) 목적 (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는 제정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됨
- 본 조례의 목적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6)과 유사하여 입법경제상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 조례간 관계에 대한 규정 추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의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안 제2조는 “청년친화도시”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제1호 “청년”, 제3호 “청년정책”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정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제2호 “청년친화도시” 정의는 기존 “청년친화도시”를 규정하고 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개정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제1항에서 “청년친화도시”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안의 “청년친화도시” 정의가 상위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 책무 (안 제3조)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제1항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함이며, 같은조 제2항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7)의 단서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에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은 “시민은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유보원칙 위반 사항은 없음

#### (4)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안 제4조)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 안 제4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각호의 규정은 「청년기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법령 통일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함

####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7) 「지방자치법」 제29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5)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중장기 기본계획과 단기 실행계획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제5조제1항 단서를 통해 「청년 기본조례」 제6조 기본계획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서 '21.12월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수립되었고 다음 기본계획 수립은 2026년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제정조례안 시행 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 (6)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것으로, 안 제5조와 동일하게 「청년 기본조례」 제7조 시행계획에 ‘청년친화도시’ 내용을 포함하고 그 경우 준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됨

## (7) 위원회의 설치 (안 제7조) 및 기능 (안 제8조)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7조는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를 시장의 의무로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생략하는 대신 안 제7조제2항 규정을 통해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sup>8)</sup>를 ‘청년친화도시

8)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② (생략)

위원회'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8) 정책연구 등 (안 제9조)

**제9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9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나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위탁규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기본조례의 청년정책 연구, 실태조사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연구 내용의 중복성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생략)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9)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안 제10조)

**제10조(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청년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안 제10조는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청년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미리 점검해야 하는 지침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 제11조(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및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3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등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다른 조례에서 시장의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친화도를 측정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안 제10조의 제정은 타당하다 하겠음

### (10) 청년친화 영향평가 (안 제11조)

**제11조(청년친화 영향평가)** 시장은 청년정책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11조는 안 제10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정책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함

## (11) 청년친화도시 지원 (안 제12조)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구가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2023.3.21.개정, 2023.9.22.시행)

**제24조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2조는 시장이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2023.3.21.) 및 시행 예정(2023.9.22.)인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규정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 먼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번 제정조례안 제12조의 근거라 할 수 있음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제2항은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제정조례안 제12조제1항 시장이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모순, 저촉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sup>9)</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과 법령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법령과 선정의 기준·방법 등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sup>10)</sup>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 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추후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례안 개정의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 (12) 경비지원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안 제13조, 제14조)

**제13조(경비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13) 교육 및 홍보 (안 제15조)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15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것으로, 청년친화적 도시 조성은 정

9) 「지방자치법」 제29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0) 2022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대법원 2000추29 판결례 참조

책의 개발 및 시행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협력이 필요함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이라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대시민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이 인정되는바, 추후 관련 교육과 홍보의 대상과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라.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제정조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수립, 청년친화도 조사, 청년정책 영향평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인지율, 체감이 낮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청년정책의 추진과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이번 제정조례안의 목적, 내용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 입법 경제상 별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락**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준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3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18일

발 의 자: 서준오, 김기덕,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박강산,  
박승진, 박철성, 유정인,  
이병도,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종국,  
최재란, 한·신 의원(17  
명)

## 1. 제안이유

-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안 제4조)
-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제6조)
- 라.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제8조)
- 마.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안 제10조)
- 바. 청년친화도시 지정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 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청년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친화 영향평가) 시장은 청년정책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구가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050300000004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서준오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05.03.

회신일 : 2023.05.15.

내용문의 : 02-2180-7955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정책연구 등), 제10조(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제13조(경비지원) 및 제15조(교육 및 홍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시에서 현재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현저히 다를 수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참조]

2023년 서울시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

세부사업명	편성목	예산현액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	계	2,107,0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004,400
	마을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용	764,457
	마을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용(성동구)	38,223
	청소년의 올바른 발육발달 지원사업	300,000

자료 : 2023년 서울시 평생교육국 예산서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5

e-mail : kjh0123@seoul.go.kr